제초제저항성 콩 SYHT0H2 제초제저항성 콩 (SYHT0H2)

1. 심사경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 제초제저항성 콩 SYHT0H2는 '12. 09. 28일 위해성심사가 신청되어
 총 3회에 걸쳐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2. 심사대상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외국의 승인현황
제초제저항성 콩 SYHT0H2	신젠타코리아㈜	제초제저항성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대만,

3. 심사방법

1)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제초제저항성 LM콩 SYHT0H2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하고,
2) 통합고시 제3-1조에 의거 제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자료"가
 과학적인 심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며,
3) 비의도적으로 방출되었을 경우 작물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심사함

4. 심사의뢰 자료 검토

1) 협의심사 접수일 : 2012년 9월 26일
2) 협의심사 자료 검토 및 1차 보완자료 작성(제90차 위원회-'12.12.14.)
3) 1차 보완자료 검토 및 2차 보완자료 작성(제94차 위원회-'13.04.26.)
4) 2차 보완자료 검토 및 협의심사 검토 완료(제106차 위원회-'14.05.30.)
5) 협의심사 결고 최종 종결(제109차 위원회-'14.05.30.)

5. 유전자변형 콩의 안전성 평가 항목

6. 유전자변형 콩의 환경위해성 심사결과

농촌진흥청장은 제109차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14. 09. 26)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콩 SYHT0H2가 재배용이 아닌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비의도적으로 방출될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